

3.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제13,654호 1992. 5. 3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촉진지역

가. 개간촉진지구 : 농업·임업·축산

업 또는 수산업에 이용하거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용지로의 개발이 필요 한 지구

나. 택지개발지구 : 택지의 공급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구

다. 시설용지지구 : 광물·석재 또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거나, 공장등의 산업시설, 체육 시설, 관광객이용시설, 창고등 저장시설, 박물관등의 문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차고 기타 시설의 용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구

라. 집단묘지지구 :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가. 금속제품제조·가공시설중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나. 산업용화학제품제조·가공시설
다. 기타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 시설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중 석유정제시설·폐유재생시설 및 코크스제조시설
바. 가죽제품 제조·가공시설
사. 가목 내지 바목외의 대기오염배출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중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폐수배출시설로서”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가목 내지 카목외의 폐수배출시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 농지 및 초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산물·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설치와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축산물(사양하는 조수의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시설의 설치
5.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집하장 또는 저장시설의 설치
8. 점토를 원료로 하는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의 공장의 설치
9.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공장용지·임야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서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다만, 토지를 대지·공장용지·임야 또는 잡종지로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신고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신고등을 거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지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 나.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산업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11.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제14조제1항제1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

- 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종설을 제외한다.
- 제14조제1항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24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18. 마을공동회관 · 노인회관 · 복지회관 · 보육시설 및 농림수산물공판장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의 설치
 24.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의 설치
 - 가. 교육연구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근로자복지시설
 - 나. 전시장 · 공연장 · 박물관 및 기념관등의 문화시설
 25.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및 사료제조시설의 설치
 26. 부지의 총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종교시설의 설치
 27.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계학원의 설치
 28.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당해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지나 초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9. 부지의 총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또는 충전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당해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지나 초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0.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주기장의 설치. 이 경우 당해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1. 부지의 총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석재가공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당해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지나 초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 경우 당해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놓지나 초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지하광물 및 석재의 가공을 위한 시설(동시설과 관련되는 후생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실제 이용상황이 대지·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서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다만, 토지를 대지·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신고등을 거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15조제1항제1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8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0호 내지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시장·공연장·박물관 및 기념관등 문화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16.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8.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한다.

19.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20. 축산시설(야생조수를 사양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버섯재배사의 설치

21.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집하장 또는 저장시설과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2. 마을공동회관·노인회관·복지회관

- 보육시설 또는 농림수산물공판장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의 설치
 - 30. 점토를 원료로 하는 도자기 또는 기와등의 공장의 설치
 - 31. 부지의 총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또는 충전 시설의 설치
 - 3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너(지방 자치단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인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 질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의 설치
 - 33.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계학원의 설치
 - 3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주기장의 설치
-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건축

- 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 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2.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수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스티로폼부자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각호외의 부문중 “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을 “대

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간촉진지구의 경우: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으로의 이용 또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

9. 시설용지지구의 경우:광물·석재 또는 토석의 채취를 위한 용지로의 개발 또는 공장등의 산업시설, 체육시설, 관광객이용시설, 창고등의 저장시설, 박물관등의 문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차고 기타 시설용지로의 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

제21조제2항제1호중 “선거 및 항만”을 “선거·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 및 항만”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운동장”을 “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중 “보건위생시설”을 “보건·환경시설”로,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과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5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경우

가. 당해 토지가 택지인 경우에는 택지 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직접 결정·고시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단서 및 다목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동호바목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상수보호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30만제곱

**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
변경**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2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와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분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 · 채광지구 · 채석지구 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라 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 · 채광지구 · 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로 본다.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